#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436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9.

발 의 자:조명희·추경호·홍문표

박덕흠 · 성일종 · 김성원

배준영 • 하영제 • 황보승희

김용판 · 배현진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 야 하나 현행법률 중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이에 "중심선상부"를 "중심선의 최상부"로, "개폐"를 "개정 또는 폐지"로, "도시하면"을 "그림으로 보면"으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,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(안 제2조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1호 중 "중심선상부에"를 "중심선의 최상부에"로 한다. 제18조제2항제2호 중 "개폐"를 "개정 또는 폐지"로 한다. 별표 1 제1호가목 중 "도시(圖示)하면"을 "그림으로 보면"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 중 "도시하면"을 각각 "그림으로 보면"으로 하며,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"도시하면"을 각각 "그림으로 보면"으로 하며, 같은 표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"도시하면"을 가각 "그 림으로 보면"으로 하고, 같은 표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"도시하면"을 각각 "그리으로 보면"으로 하며, 같은 표 제4호가목(1)부터 (3)까지 중 "도시하면"을 각각 "그림으로 보면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"기본표면"이란 착륙대의	11
긴 방향 <u>중심선상부에</u> 접하	<u>중심선의 최상부에</u> -
는 일직선에 중심을 둔 직사	
각형의 표면(수직투영면이	
착륙대와 같은 표면을 말한	
다)을 말한다.	
12. ~ 15. (생 략)	12. ~ 15. (현행과 같음)
제18조(비용의 부담) ① (생 략)	제18조(비용의 부담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	②
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	
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	
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르	
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	
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	
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법령의 <u>개폐</u> 등으로 인하여	2 <u>개정 또는 폐지</u>

매수청구의	사유가	소멸된	
경우			
③ (생 략)			③ (현행과 같음)